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50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문진석 · 김기표 · 이해식
박상혁 · 한민수 · 진선미
전용기 · 김주영 · 김용만
박정현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

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료의 제출을 대신하여 비공개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비밀”을 “비밀(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열람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생 략) <u><신 설></u>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u>
② (생 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 다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료의 제출을 대신하여 비공개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u>
③ · ④ (생 략) 제14조(인사청문회의의 공개)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제18조(주의의무) ① (생 략)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 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 문을 통하여 알게된 <u>비밀</u>을 정 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윤 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 개할 수 있다.</u> 제18조(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 ----- -----<u>비밀(제12 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열람한 자료를 포함한다)</u>----- ----- -----.
--	---